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12호, 2006. 12. 28. 공포·2007.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131호, 2007. 6. 28. 공포·2007. 7. 1. 시행)되고,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금은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의 대여 및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함.(안 제3조)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 관리관에게 위탁함.(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5조)
- 기금의 지원대상·신청·결정방법,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안 제11조)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12조)
-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함.
(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가 연 3%에서 1%로 하향되는데 기 용자받은 대여금도 적용받게 되는가?	○ 조례 공포이후 부터는 1%로 적용을 받게 됨.(사회복지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의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5.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7.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제 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자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별로 7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 점포의 임대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차액 보전) ①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호
의결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12호, 2006. 12. 28. 공포 · 2007.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131호, 2007. 6. 28. 공포 · 2007. 7. 1. 시행)되고,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 ·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금은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구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차액의 보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의

대여 및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함.(안 제3조)

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며,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함.(안 제4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에서 심의함.(안 제5조)

마. 기금의 지원대상·신청·결정방법,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이차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12조)

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함.(안 제13조)

□ **첨 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의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5.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7.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자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별로 7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 점포의 임대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1. 05. 15 조례 제1833호

개정 2004. 01. 15 조례 제1999호

개정 2005. 11. 11 조례 제212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2. 경기도 또는 시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중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에 필요한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 <개정 2005.11.11>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조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적립금이 10억원이 될때까지는 당해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의 이자율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4.01.15>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신설 2004.01.15>

제10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관리공무원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1. 5. 15 조례 1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2004. 01. 15 조례제1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경된 비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 11. 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6조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15조(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5의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5의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개정 2006.12.28>
-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용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2 (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2.28]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8>

②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07. 6. 28>]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6.28>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제42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6.2.22, 2007.6.2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의 거쳐 제1항의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때에는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1>